

취득대상재산현황

□ 중앙공원 내 토지매입

- 위 치 : 원미구 원미동 산29-12번지
- 면 적 : 11,787㎡
- 소 유 자 : 대한불교조계종 석 왕 사
- 예 산 액 : 765,765천원
- 취득사유 : 멀피길 개선공사 시 석왕사 소유의 토지가 분할된 잔여토지로서 매입 후 중앙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보건향상에 제공하고자 함.

□ 오정어린이집(오정새마을 유아원)신축

- 위 치 : 오정구 오정동 364-6번지 외
- 면 적 : 630㎡
- 건축 연면적 : 759.6㎡(230평)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2층의 라멘조
- 예산액 : 594,608천원
- 신축사유
 -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새마을유아원을 유아보육시설로 93. 12. 31한 전환하여야 하며
 - 기존의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현재 조립식 한식건물로 녹슬고 낡아 우천 시 누수가 심하고 누전의 위험이 있으며
 - 주변 120여명의 유아를 수용하여 주부의 위협기회 확대

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5

제 출 자 : 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93. 11. 9

나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93. 11. 12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위생과장 박외석

나. 제안사유

- 공중위생법 제3조 제2항의 “시장(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. 이와같다)” 내용 중 구에 대한 보사부 질의 회신 내용이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판명됨에 따라
- 88. 4월 구청 개청과 함께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업무 이관된 공중위생사무를 권한위임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생업무를 수행코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이용업, 미용업, 유기장업과 제2호 중 세탁업, 위생처리업을 권한위임하고,
- 공중위생법 제2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구에 권한위임시키자는 것임.

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시장 고유권한 사항을 구청장이 권한 행사한 것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줄 것	○ 공중위생법 제3조 제2항 “시장(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……)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업무를 구청에서 관장하였으나, ○ 보사부에 제차 질의한 결과 자치구 소관 업무 사항이라는 회답을 받고, ○ 뒤늦게 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한 업무를 수행토록 코자함

4. 토론 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 음

나. 찬성토론 : 진작 위임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사항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8. 기타 필요한사항 : 없 음
9. 체계적 심사내용 : 없 음

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8
의 건	제24회
년 월 일	(93.11.20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☐ 93. 6. 10일자 공중위생법 제3조 2항의 “시장(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 내용 중 “구”에 대한 보사부 진의 회신 내용이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판명됨에 따라
- ☐ 88. 4월 구청 개청과 함께 구청장 고유 권한으로 업무 이관된 공중위생 사무를 권한위임으로 개정하여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
- ☐ 공중위생업무의 지도 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위생 업무를 수행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☐ 업무 이관된 다음 사항의 공중위생 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
- 시설 기준 중 등급 기준
 - 영업의 허가 및 신고
 - 조건부 영업 허가
 - 영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
 - 영업의 승계
 - 영업의 계속
 - 출입, 검사
 -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
 - 폐기 처분
 - 행정 처분
 - 청 문
 - 폐쇄 조치

-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
-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 요구 등
- 공동 급수시설의 관리
- 파테료 부과 징수 절차

(적 용 대 상)

-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이용법, 미용법, 유기장업 및 제2호 중 가목의 세탁업 및 위생처리업과 동법 제26조의 공중이용시설

3. 법적 근거 : 지방 자치법 제15조

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위임사항) (별표)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 위생과 난 중 [별지]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이전 인·허가 및 신고 처리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

실과별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
위생과	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.(단, 시장권한 사항 중 구 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적용 대상 업종명에 열거된 것에 한함.) 1. 시설 시준중 등급 기준 2. 영업의 허가 및 신고 3. 조건부 영업 허가 4.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5. 영업의 승계 6. 영업의 계속 7. 출입 검사 8. 위생 지도 및 개선 명령 9. 폐기 처분 10. 행정 처분 11. 청 문 12. 폐쇄 조치 13.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14.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 요구 등 15. 공동 급수시설의 관리 16.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(적용 대상) •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이용업, 미용업, 유 기장업 및 제2호 중 가목의 세탁업 및 다목의 위생처리업과 동법 제26조의 공중이용시설	공중위생법(이하“법”이라한다)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10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9조 법 제31조 법 제44조

신·구 조문 대비표

(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)

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

현행			개정		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령적용	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령적용
	(신설)		위생과	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(단, 시장 권한사항 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적용 대상업 중명에 열거된 것에 한함.) 1. 시설기준 중 등급 기준 2. 영업의 허가 및 신고 3. 조건부 영업 허가 4.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5. 영업의 승계 6. 영업의 계속 7. 출입 검사 8.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9. 폐기 처분 10. 행정 처분 11. 청 문 12. 폐쇄 조치 13. 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14.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요구 등 15. 공동 급수시설의 관리 16. 파태료 부과 징수 절차 (직용대상) •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이용업, 미용업, 유기장업 및 제2호중 가목의 세탁업 및 다목의 위생처리업과 동법 제26조의 공중이용시설	공중위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10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9조 법 제31조 법 제44조